

[별표 2] <개정 2008.7.24>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다.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대책
10.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해발고 300미터 미만인 경우(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배선 첩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